

정부시설공사입찰제도

- 50억미만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김 일 /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팀 팀장

최근 정부계약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정부출범 1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성격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가계약제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과 맞물려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PQ 및 적격심사 제도의 개편, 각종 계약관련 하위 규정 통폐합 등 계약 및 입·낙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정부계약제도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발맞추어 평소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질의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시설공사입찰실무에(전문공사 50억 미만 적격심사 중심) 대한 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글 쓰는 순서]

- | |
|------------------------|
| ① 정부시설공사입찰제도 일반 : 이번 호 |
|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 : 다음 호 |

I . 정부시설공사 입찰일반

1. 정부시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

Q 우리 회사는 올해부터 정부시설공사입찰에 참가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정부시설공사입찰은 관계법령에 의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일명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께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당해 사이트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됩니다.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은 공인인증발급기관(한국증권전산 등)을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면허 등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여 하시면 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g2b 콜센터인 1588-08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조달청 g2b사이트에 등록하면 모든 공공공사 입찰의 조회 및 참가 가능 여부

Q 그럼 상기 조달청 g2b사이트에 등록하면 모든 공공공사 입찰의 조회 및 참가가 가능합니까?

A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에 조회 및 참가가 가능하지만, 국방부·정부투자기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등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입찰을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입찰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PQ와 적격심사제도에 대하여

Q 처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PQ와 적격심사제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데 두 제도는 무엇을 말하는지요?

A 많은 회원사들이 입찰에 참가하고 있지만 사실 PQ와 적격심사제도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적격심사제도 평가방법의 많은 부분이 PQ제도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도 준용하여 사용되는 조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계약법상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적격심사제도부터 말씀드리면 적격심사는 입찰제도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는 낙찰자 결정방식 중 하나로 경쟁으로 집행하는 정부공사 입찰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1차로 자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업체의 공사이행능력,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2단계 낙찰자 결정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설공사에서 낙찰자 선정방식으로 상기와 같은 적격심사방식과 최저가낙찰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Q는 Pre-Qualification의 약자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란 용어로 공사규모가 크고 시공이 어려운 공종(추정가격100억원이상, 댐·교량 등 22개공종)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입찰 전에 당해 업체

의 시공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성실시공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PQ는 우리 회원사들의 입찰실무에 관련성이 적은 계약체결방법 중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의 하나로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하나의 방식인 적격심사와는 그 성격과 태생이 다릅니다.

4. 적격심사기준들 중 어떤 것을 숙지해야 하나

Q 적격심사기준들이 왜 이렇게 많죠? 조달청, 재경부, 행자부 기타등등 우리회사는 어떤 것을 숙지해야 하나요?

A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법령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적격심사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하는 조달업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공사에 해당되면(예, 국가기관은 추정가격30억원(전문공사3억)이상 공사 등)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토록 함으로써 조달청 역시 별도의 적격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회사에서는 입찰공고문에 입찰공고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조달청 계약기준인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시키고,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인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을 적용시키며, 각 정부산하기관(정부투자·출연기관, 공기업 등)에 자체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5. 시공능력금액이 6억원일 경우 6억원이상의 공사입찰에 참여 여부

Q 우리업체의 시공능력금액이 6억원입니다. 그럼 6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습

니까?

A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인 경우 조달청의 계약집행기준인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공사에서는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이 공사에정금액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보아 입찰무효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적격심사기준을 따르면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의 경우에도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입찰이 공동계약이 가능한 입찰이라면 시공능력이 모자라는 부분을 공동계약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입찰공고문의 공사에정금액, 추정가격, 추정금액, 기초금액 등의 용어들을 암기하여야 하나

Q 입찰공고문을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공사에정금액, 추정가격, 추정금액, 기초금액 등등 이런 용어들을 모두 암기하여야 되나요?

A 모든 공부들과 마찬가지로 입찰실무 역시 첨에 부닥치는 난관은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암기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이런 용어들을 반드시 모두 암기하여야만 입찰실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면 용어의 뜻을 무턱대고 암기하기 보다는 그 용어의 쓰임새를 유심하게 살피시고 입찰에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파악하시는게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에 중요 입찰관련 용어해설을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용어	관련용어해설
공사에정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 검토 및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조달청)으로 사용함.
추정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에정금액-(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가) 공사에정금액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과 행자부 적격심사의 시공경험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함.
추정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가격+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가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과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공사배정의 기준으로 활용함.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초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 대가 불포함)으로서 예비가격작성의 기초금액 및 조달청 적격심사의 시공경험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 입찰일기준 7일전에 공개(조달청)함.
복수예비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적최저가낙찰제도의 당시에 도입되었던 것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동금액의 2%(행정자치부:3%)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이러한 예비가격 중에서 다빈도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것이 최종 예정가격이 됨. 이것은 예정가격의 누설에 따른 잡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최초에는 10개의 예비가격 중 3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하였으나, 동가 투찰이 많이 발생(120가지의 조합)하는 등 문제점이 생기자,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1,365가지의 조합)하도록 변경함
시공능력공시액 (시공능력평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에정금액을 말함.

입찰용어	관련용어해설
지역제한입찰	·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가가능함. - 국가기관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전문공사 5억원 미만,2003.12.12개정) -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추정가격 70억원 이하(전문공사 6억원이하,2005.4.13개정)
지역의무공동도급	· 입찰공고일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국가기관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 추정가격 244억원 미만 - 시도교육청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제한하지 않음.
시공비율 (공사참여지분율)	·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낙찰된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시 각 구성원의 평가자료 인정에 적용함.
총액입찰	·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제도이며 낙찰된 회사는 착공계 제출시 입찰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
내역입찰	·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7.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동일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유·무효 여부?

Q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동일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A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

인인 두 법인이 1건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정부입찰에 있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에서 ③까지 생략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2.2, 1999.9.9)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p>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p> <p>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p> <p>나. 대표자의 성명</p> <p>다. 사업자등록번호</p> <p>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내용</p> <p>7. 영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또는 하수급인의 기재가 누락된 입찰(폐지 2004.1.1)</p> <p>7의2.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p> <p>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p> <p><u>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u></p>

2)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p>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12.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

8. 개찰결과 2순위로 선정되고 1순위 낙찰예정자가 입찰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지

Q 개찰 결과 저희 회사가 2순위로 선정되고 1순위 낙찰예정자가 입찰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나요?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귀 회사의 경우처럼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법인대표자 변경등기 중 입찰공고된 입찰에 종전 대표자로 참가하여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된바 해당입찰의 유·무효 여부

Q 당사는 법인대표자변경신고를 2005년 6월16일 신고하여 6월17일 변경등기 하였으나, 2005년 6월 9일 입찰공고된 입찰에 종전 대표자로 7월 6일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된바 해당입찰의 유·무효 여부?

A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일(현장설명참가 의무공사) 또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현장설명일 또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

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이 경우 차순위업체를 낙찰대상자로 선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공동도급을 구성한 경우 현장설명 참가시 공동도급 대표자 혹은 구성원 전부 참가 여부

Q 현장설명 참가 의무대상공사에서 있어서 공동도급을 구성한 경우 현장설명 참가는 공동도급 대표자만 하는지 또는 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 지 여부?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수급인중 선임된 공동도급대표자는 수급인을 대표하며, 계약체결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장설명참가 및 입찰서 작성의 경우 등 공동도급 대표자만의 참가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11. 각 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및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Q 각 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및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A 각 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통상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에 게재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안내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 주 기 관 명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예정가격 결정방법
조달청	기초금액의 +2% ~ -2% :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적격대상자 선정 후 예정가격과 함께 공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그중 다빈도 순으로 4개 를 선정 산술평균한 금액(1원미만 절상)

발 주 기 관 명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예정가격 결정방법
행정자치부	기초금액의 +3% ~ 0% : 7개 0% ~ -3% : 8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작성(적격대상자 선정 후 예정가격과 함께 공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하여 그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선정 산술평균한 금액(1원미만 절상)
대한주택공사	기초금액작성 없이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통상 94% ~ 100%사이에서(입찰공고문에별도명시) 복수예비가격 15개 무작위작성(적격대상자 선정 후 예정가격과 함께 공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천원미만 절상)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기초금액작성 없이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통상 95% ~ 100%사이에서(입찰공고문에별도명시) 복수예비가격 15개 무작위작성(적격대상자 선정 후 예정가격과 함께 공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하여 그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선정 산술평균한 금액
K T	복수예비가격의 15개 작성 : (입찰참여 전 공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4개씩 선택하여 그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선정 산술평균한 금액(1원미만 절사)

12. 기계설비공사와 소방시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에 입찰 참여시 소방시설공사업도 적격심사 평가 대상항목에 포함 여부

Q 기계설비공사와 소방시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에 입찰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입찰공고문에 주 공사는 기계설비공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도 적격심사 평가 대상항목에 포함되니까?

A 통상 당해공사가 복합공사인 경우 공사에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주 공사로 하며,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 상에 주 공사에 대한 명기를 하여 줍니다. 따라서 귀사가 질문하신 공사입찰의 경우도 기계설비공사의 공사에정금액이 소방공사에정금액보다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1항2호라목에 의하면 “공동계약에 있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사에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공사에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되고,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에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3조제3항1호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평가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질의하신 공사입찰에 있어 주 공사가 기계설비공사라면 평가대상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에 해당되며, 소방시설공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분담이행과 공동이행

Q 입찰공고문에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은 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분담이행은 뭐고? 공동이행은 뭘니까?

A 공동계약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계약 및 입찰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실무에 있어서도 공동계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회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여 입찰의 경우에는 어렵게 1순위 낙찰예정자가 되고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낙찰이후 공사이행 중에는 공동수급구성원간 또는 발주자, 하도급업체와의 관계 등등에서 문제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회사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공동계약에 있어 분담이행과 공동이행의 차이점과 특성을 비교한 표를 제시 하오니 입찰 및 계약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비 고
1. 구 성	-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	- 분담내용에 의한 구성	
2. 대표자의 권한	- 입찰, 대금청구 및 수령,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등	- 좌 동	
3. 각종보증금의 납부	-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중 하나가 일괄납부 가능	-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납부	입찰 · 계약 · 하자보증금
4. 시공능력공시액의 적용	- 합산하여 적용	- 분담내용별로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	
5. 대가의 지급	-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	- 좌 동	
6. 계약이행의 책임	- 구성원의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책임	
7. 하 도 급	-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하도급 불가	- 구성원 각자의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하도급 가능	
8. 손익배분	- 투자비율에 의한 배분	- 분담공사별로 배분. 단, 공통비용은 분담공사금액비율에 따라 배분	
9. 중도탈퇴	-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 탈퇴 불가	- 좌 동	
10. 구성원중 파산 · 해산시	- 잔여구성원이 연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	-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 -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불이행시 잔여구성원이 연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	
11.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 구성원의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	- 좌 동	
12. 하자담보	- 공동수급체 해산 후 당해 공사 하자발생시 구성원의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	

14.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 낙찰 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자격 무효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된 이유

Q 저희 회사는 지방의 모 발주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입찰에 공동계약(당사1,지방회사2개사,소방분담1개사)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는데, 입찰자격 무효로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되었다

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입찰자격 무효가 되었나요?

A 정부시설공사 입찰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각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각 발주기관의 특성에 맞게 두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영요령』에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인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은 5%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달청에서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에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달리 규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 3인(지역제한경쟁입찰이외의 공사로 공사현장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를 1인이상 포함한 경우 5인),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 2인(지역제한경쟁입찰이외의 공사로 공사현장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를 1인이상 포함한 경우 3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본인이 짐작컨대 행정자치부에서 발주한 공사인 경우 입찰구성원의 수를 5인이하 내지는 입찰공고문상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당해 입찰을 이와 동일시하여 입찰공고문상에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계약을 4인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상기에서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조달청의 경우 입찰공문상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 100억 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포함하여도 공동계약 구성원의 수는 3인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15.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지역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나

Q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인 경우도 지역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지역업체와 공동 계약 시 지역가산 평가방법 및 그 적용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A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지역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산 평가방법은 조달청과 행정자치부의 적용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해당기준의 조문으로 설명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실무사례를 곁들여 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로서 가산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일까지는 해당지역에 계속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달청 실무사례》

- 지역업체A(시공비율:25%) 대표업체B(시공비율:75%)
- A업체의 시공비율 $25\% \times 1/2 = 12.5\%$, 상한선 10% 이상
이므로
- **평가분야별 가산비율은 10%**, 즉 추정가격 50억미만1억 이상 공사의 시공경험에서 평점 10점을 받으면 10%인 1점이 적격점수에 가산됨.
- 그러나 위 공사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A업체의 시공비율25%에서 **10%초과한 초과비율 15%** $\times 1/2 = 7.5\%$, 상한선 10%이내이므로
- **평가분야별 가산비율은 7.5%**, 즉 추정가격 10억미만1억 이상 공사의 시공경험에서 평점 10점을 받으면 7.5%인 0.75점이 적격점수에 가산됨.
- 따라서 **조달청 발주공사 중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외의 경우는 지역업체 가산최고 시공비율은 20%이며,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30%임.**

《행정자치부 실무사례》

- 지역업체A(시공비율:30%) 대표업체B(시공비율:70%)
- A업체의 시공비율 30%에서 **15%초과한 초과비율은 15%** $\times 1/3 = 5\%$, 상한선 15%이내이므로
- **평가분야별 가산비율은 5%**, 즉 추정가격 50억미만1.5억 이상 공사의 시공경험에서 평점 10점을 받으면 5%인 0.5점이 적격점수에 가산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최고 시공비율은 60%임.**

1-16.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인 경우 지역가산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PQ 제6조제4항제2호 준용)에 의하면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겹치는 경우에는 지역 가산비율은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지역인 경우 1개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은 5%이며, 3개 지역인 경우는 3.33%가 적용됩니다.

(다음 호에는 적격심사에 대한 세부기준이 이어집니다.)